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불비사항 보완하여 법의 구체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제3항)
- 제14조제3항 신설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나. 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 제21조의2(사업비용 지원)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대통령령 제 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를“(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해당 역사문화권의 다양한 유산이 포함되도록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사업비용 지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
2.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사업
3. 역사문화환경 활용·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기타 정비사업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② (생략) <u><신설></u>	제14조(정비구역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해당 역사문화권의 다양한 유산이 포함되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u><신설></u>	제21조의2(사업비용 지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 2.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사업 3. 역사문화환경 활용·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기타 정비사업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연락처	(042) 481 - 4798